

○○초 학생 학교 급식관련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5나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손해배상
원고	○○○ 외1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1
판결선고일	2015. 9. 10.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○○초등학교 담임교사는 망인 ○○○에게 심각한 ‘유제품 알레르기’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. 4. 3 급식시간에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은 것과, 유제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. - 이는 담당 교사 및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이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 제기. 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13.4.3.부터 15.9.1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 2.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9,845,694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. 4. 3.부터 2014. 10. 30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 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망인의 담임교사는 망인이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우유를 섭취한 것을 안 이상 적어도 망인을 보건교사가 있는 보건실로 가도록 하거나, 망인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다 잘 알고 있는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보호·감독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, - 단지 망인과 10분 정도 구두 상담을 진행하며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망인의 진술과 외관만을 믿고 상담을 종료한 것만으로는 그 보호·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, - 이 사건 사고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우유 알레르기 증상이 한 원인이 되어 발현된 것인 이상 이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, 다만 그 책임 범위를 35%로 제한하여 치료비(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비에서 지급하여 손해 없음)와 위자료 지급. 		

